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2023. 2. .

국 토 교 통 부
(녹 색 도 시 과)

1. 개정이유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의 연차별 지원항목을 조정하며,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안 제2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

나. 도시·군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의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안 제4조제3항)
주민지원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로 추진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2차 연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신청하도록 조정하고, 사업 추진단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다.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산출의 객관성 확보(안 제6조제3항)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근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로 한다.

제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편의지원사업(이하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앞에 “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설계비와 보상비”를 “설계비”로,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상비와 공사비”로, “있다”를 “있다. 다만 사업 추진단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제34조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원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등을 참조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정당시거주세대”를 “지정당시거주세대(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세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주민지원사업“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편의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과 그 밖의 연구·조사사업을 말한다.</p> <p>2. “지정당시거주세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p>	<p>제1조(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p> <p>제2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p> <p>2.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편의지원사업(이하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p>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의 신청일 현
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
부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18조제2항제3호
의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
춘 세대를 말한다.

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

제3조(시행기관)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
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
장 등이 시행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② (생략)

③ 주민지원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2년 이상 장기계속
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연도
에는 설계비와 보상비만 신청하

<삭 제>

제3조(시행기관) -----

----- 시
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설계비-----

여야 하고, 2차 연도에는 보상
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
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
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
출 등) ① (생략)

② 주민지원사업의 생활편익사
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
업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을 득하고 설계, 인·
허가 등을 마친 사업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인·허가 등을 필요하지 아니하
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보상
비와 공사비-----

----- 있다. 다만 사업
추진단계, 사업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
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
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
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

<p>제9조(생활비용보조사업 절차 등)</p> <p>① 생활비용의 보조는 <u>지정당시 거주세대</u> 중 영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u>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원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등을 참조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9조(생활비용보조사업 절차 등)</p> <p>① ----- <u>지정당시 거주세대(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영 제18조 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세대)</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